

○○○○고등학교 학생안전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20가합○○○○○ [1심]	사건유형	손해배상(기)
원고	○○○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[1심]2021. 11. 25. 원고일부승	비고	
사건개요	<p>○ 원고는 사건 당시 □□□□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2015. 5. 5.경 △△중학교 체육관에서 체조훈련을 하던 중 ‘손 짚고 앞돌아 공중 1/2턴’ 동작을 시도하다가, 공중에서 턱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채 떨어지면서 머리로 바닥을 충격하였고, 이로 인해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었음.</p> <p>○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고 전날 원고에게 과도한 체력훈련 및 체중감량을 실시하도록 한 체조부 지도자들과 이를 지휘·감독하는 □□□□고등학교 교장이 원고에 대한 보호·감독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며,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를 제기함.</p>		
주 문	<p>1. 원고에게</p> <p>가. 피고 인천광역시는 998,234,823원과 이에 대하여 2015. 5. 5.부터 2021. 11.25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</p> <p>나. 피고 인천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는 288,405,0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. 12. 5.부터 2021. 11. 25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</p> <p>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</p> <p>3. 소송비용 중,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4/10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인천광역시가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인천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한다.</p> <p>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</p>		
판결이유	<p>○ 이 사고는 체조부 지도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보호·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, 체조부 지도자들로서는 훈련 중 이 사건 사고발생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임. 피고는 위 지도자들과 이들을 지휘, 감독하는 □□□□고등학교 교장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.</p> <p>○ 원고 역시 평상시와 달리 심각한 정도로 체력이 저하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고, 사고의 발생이 예상됨에도 사고 동작을 그대로 한 과실이 있어, 피고의 책임을 60%로 제한함.</p>		